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3년 10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예규·판례

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두 45736,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 처분 개요

-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 원고의 임·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 5. 13.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18 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9 호의 2 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판단(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 두 3972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의미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금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3 호의 ‘인건비’ 내지 제 22 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제적·법률적 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인 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 다 186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18 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 제 19 호의 2(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 2 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3 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아가 신설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설규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별도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없었던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이를 고려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 14 조 및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1 서 6747, 2023.10.11)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플랜트관련 통합솔루션 전문회사인 미국법인(이하 “AAA”라 한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IGC 및 스위스 소재 자매회사(이하 “BBB”

라 하고, AAA 와 합하여 이하 “AAA 등”이라 한다)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독점 판매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컨설팅 및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2017~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2019 사업연도 중 AAA 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이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 14 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위스조세조약”이라 한다) 제 12 조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 14 조 및 「법인세법」 제 93 조 제 8 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인용)

-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AAA 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뒤, 이를 다시 고객사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A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개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소프트웨어가 주로 정유·화학·조선·해양 분야 등의 생산·제조설비 설계에 쓰이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는 하나, ‘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여러 산업 직군에서 사용한다거나 저렴한지 여부가 아닌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형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일부 산업 직군에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 직군의 설계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청구법인은 일종의 판매대리점 지위에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왔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 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고객사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프트웨어 중 일부를 개작해왔다거나 AAA 등과의 배포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특정하여 최종 이용자인 고객사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이용한 것으로서 쟁점지급금이 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하나,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계·수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설치환경을 제공해주는 용역이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들과 무관한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에서 실제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개작되었다고 불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저작권법」 제 2 조 제 23 호 등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배포권”은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에 대한 비배타적 권리만이 허용되어 있고 AAA 가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만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이 저작물의 개작·배포 등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데 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 2023 지 3665, 2023.09.27)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9.8.20. 회생계획인가결정 받은 후 2019.9.9. 자본금을 증자(출자전환)하고, 이를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 24 조 제 1 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4.10. 청구법인에게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 28 조 제 1 항 제 6 호 가목 2)의 세율(1 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① :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쟁점②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판단(경정)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24 조 제 1 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 항 본문 및 제 4 호에서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주 발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5 조 제 1 항에서 등기소는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4 항에서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4 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4 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 「지방세법」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4 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제 4 항이 「지방세법」 제 26 조 제 2 항 제 1 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000 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 누 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 30 조 제 1 항에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2 조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 30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 53 조부터 제 55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 16039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53 조 제 1 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53 조 제 1 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같은 법 제 55 조 제 1 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57 조 제 1 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 두 7886 판결, 같은 뜻임).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 2023 중 7428, 2023.10.04)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운수 서비스 관련 보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 차량 2 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관련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유류대, 통행권구입비, 자동차세, 보험료, 세차비, 타이어비, 유리선팅비, 차량수리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 ~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차량 관련 비용 계상 적정여부에 대해 해명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2022.11.10.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 ~ 2021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2022.12.22. 그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며 2019 ~ 202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 27 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 50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쟁점비용이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23.2.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①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쟁점② : 쟁점비용 관련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판단(각하)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제 1 항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

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한 법인세액의 변동 없이 소득처분만을 상여에서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상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향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여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마. 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549, 2023.10.05)

■ 질의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 9 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9199 호, 2022.12.31., 일부 개정된 것) 제 16 조의 2, 제 16 조의 3, 제 16 조의 4 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254, 2023.10.19)

■ 질의

- '23.1.1. 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비과세 · 납부 · 과세특례 관련 적용법률
-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벤처기업이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23.1.1. 이후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과세 · 납부 ·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

■ 회신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 조제 1 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같은 법 제 16 조의 3 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해당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9199 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 제 16 조의 2, 제 16 조의 3, 제 16 조의 4 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